



제43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84호)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건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20호)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2026. 3.

정 치 개 혁 특 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III. 총괄 검토의견	31
1.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제) 및 선거구 확정	31
2.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및 절차	36
3.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및 절차	38
4.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쟁점	39
IV. 개별 검토의견	43
1.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 기준 조정	43
2. 지방의회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도입	48
3. 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50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찬반투표 도입 등	54
5. 시·도의회의원선거: 원칙적 비례대표제 및 보정제도 도입	57
6.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폐지 및 최소의원정수 확대	60
7.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절차 정비	62
8. 지방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65
9.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홀수로 구성	71

10.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증원	73
1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총량제 폐지 및 인구연동 산정방식 도입	75
12. 시·도의원지역구 확정 기준 정비	77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의석 비율 확대	79
 참고 1. 개정안 조문대비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이원택의원안], [정춘생의원안1], [임미애의원안1], [이해식의의원안],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장경태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송옥주의의원안],
[정혜경의원안1], [윤준병의원안], [이상휘의원안], [용혜인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임미애의원안2], [박덕흠의원안], [정점식의의원안],
[한창민의의원안], [정춘생의원안2], [정혜경의원안2], [임미애·정춘생
·정혜경의원안], [김문수의의원안], [정춘생의원안3], [김한규의원안]

I. 제 안 경 위

1. 이원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2. 정춘생의원안1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5. 7. 30.

다. 회 부 일 : 2025. 7. 31.

3. 임미애의원안1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5. 9. 23.

다. 회 부 일 : 2025. 9. 24.

4. 이해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10. 31.

다. 회 부 일 : 2025. 11. 3.

5. 차규근·김영배의원안

가. 제 안 자 : 차규근·김영배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5. 11. 17.

다. 회 부 일 : 2025. 11. 18.

6. 장경태의원안

가.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24.

다. 회 부 일 : 2025. 11. 25.

7. 진성준의원안

가.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8.

다. 회 부 일 : 2025. 12. 19.

8. 송옥주의원안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14.

다. 회 부 일 : 2026. 1. 15.

9. 정혜경의원안1

가. 제 안 자 : 정혜경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21.

다. 회 부 일 : 2026. 1. 22.

10. 윤준병의원안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22.

다. 회 부 일 : 2026. 1. 23.

11. 이상희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상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22.

다. 회 부 일 : 2026. 1. 23.

12. 용혜인의의원안

가. 제 안 자 : 용혜인의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6. 1. 23.

다. 회 부 일 : 2026. 1. 26.

13. 김성원의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26.

다. 회 부 일 : 2026. 1. 27.

14. 임미애의원안2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27.

다. 회 부 일 : 2026. 1. 28.

15. 박덕흠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16. 정점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2. 2.

다. 회 부 일 : 2026. 2. 3.

17. 한창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6. 2. 11.

다. 회 부 일 : 2026. 2. 12.

18. 정춘생의원안2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8인

나. 제 안 일 : 2026. 2. 12.

다. 회 부 일 : 2026. 2. 13.

19. 정혜경의원안2

가. 제 안 자 : 정혜경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6. 2. 12.

다. 회 부 일 : 2026. 2. 13.

20. 임미애 · 정춘생 · 정혜경의원안

가. 제 안 자 : 임미애 · 정춘생 · 정혜경의원 등 18인

나. 제 안 일 : 2026. 3. 4.

다. 회 부 일 : 2026. 3. 5.

21. 김문수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문수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6. 3. 17.

22. 정춘생의원안3(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5.

다. 회 부 일 : 2025. 11. 6.

23. 김한규의원안(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22인

나. 제 안 일 : 2026. 3. 4.

다. 회 부 일 : 2026. 3. 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원택의원안

현행법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시·군의 인구 5만명을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2. 정춘생의원안1

현행법은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3. 임미애의원안1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중선거구제를, 광역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 지역구 의석수의 10분의 1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이 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선거 때마다 의회 내 정당 구성이 극단적으로 바뀌어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보다는 사실상 정당의 임명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실태는 정당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높여 일당 독점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정치의 활력을 되찾아 행정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있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을 폐지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등).
-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같은 조 제8항).
- 다. 시·도의회의원은 선거구시·도의원과 보정시·도의원으로 구성하되, 보정시·도의원은 선거를 하지 아니함(안 제20조제2항).
- 라. 선거구시·도의원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를 단위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선거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선거구시·도의원정수는 2명 이상 6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별표 2 등).
- 마. 보정시·도의원 의석은 시·도별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시·도의원정수(선거구시·도의원정수와 보정시·도의원정수를 합한 수)에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의석에서 해당 정당의 선거구시·도의원 당선인수를 제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190조의3 신설).

4. 이해식의원안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5. 차규근·김영배의원안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

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 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6. 장경태의원안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7. 진성준의원안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등 4개 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었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실시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다시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예정임.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확정안에 따르면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통합 이전의 2개 선거구 체제로 복원되고, 서초구 역시 특례로 증원되었던 의원정수가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종전 2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다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통합돼 4명을 선출하던

구조에서 시범실시 지역 종료에 따라 소선거제로 복원되지 않고 의원정수만 1명 감원된 3명 선거구로 획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선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또한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여 헌법상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라 선거구와 송파구 아 선거구의 경우 인구 규모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현행 의원정수로는 유권자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3 및 부칙 제3조).

8. 송옥주의원안

현행법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량제는 선거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정수가 아니고, 선거 직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정한 숫자에서 자치구·시·군의회가 나눠 갖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한 지역들은 시·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아 주민대표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시·군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시·군의 인구(자치구·시·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시·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삭제, 같은 조 제2항 신설).

9. 정혜경의원안1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

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였음. 선거결과 시범 실시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늘어난 효과를 확인하였음.

시범 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안 제26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답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0조).

10. 윤준병의원안

현행법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와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정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소 정수 배정기준인 ‘인구 5만명’이 지방의 인구 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11. 이상회의원안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 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시·군 당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대하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군 당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경우에는 단독 시·도의원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지고,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현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을 위해서는 시·도의원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 예외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 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삭제, 제26조제1항제2호).

12. 용혜인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나.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

13. 김성원의원안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은 자치구 시·군·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14. 임미애의원안2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15. 박덕흠의원안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

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시·도의 행정구역 수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난 해 10월 기준 인구수 159만 5,873명인 충청북도의 의원정수는 31명인 것에 비해 인구 수가 더 적은 151만 683명의 강원도 의원정수는 44명이며, 각각 인구 수가 178만 950명과 172만 8,726명인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수가 많은 전라남도 의원정수는 55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36명에 불과해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의원 정수 기준인 인구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이대로라면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16. 정점식의원안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시·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별 최소 시·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17. 한창민의원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18. 정춘생의원안2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는데,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0조제2항 및 제191조제2항 등).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이하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현재 기초의원선거에서 선거구 당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통해 기초의회에서 다양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대 양당이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등).

19. 정혜경의원안2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을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든 정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제1항 등).

20. 임미애·정춘생·정혜경의원안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통합을 추진하는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은 인구 차이에 비해

시의회와 도의회간 의석수의 격차가 커서 현행 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인구 대표성의 불비례가 심화될 우려가 크며, 시지역 의석을 단순 증원하기에는 의석 증원 규모가 커져서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재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은 일당독점 구도가 공고한 지역이 많아, 통합시의회의 구성에 있어 표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의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구도만 강해질 뿐 실질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확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21. 김문수의원안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도의회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회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통합 창원시의 선례에 비추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평균인구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구위원을 2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내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22. 정춘생의원안3(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

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 제6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 제1항 삭제).

23. 김한규의원안(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

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확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Ⅲ. 총괄 검토의견

1.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제) 및 선거구 확정

선거구란 전체 선거인을 일정 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단위 지역으로,¹⁾ 선거구제를 정비하는 것은 각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음.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당 1명의 대표를, 중선거구제는 지역구당 2~4명의 대표를,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소선거구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대선거구제도 활용되고 있음.

이처럼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구분하기도 하고, 중대선거구제로 통합하여 보기도 하지만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구분하는 경우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아우르려는 제도적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양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함께 지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음.²⁾

1)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9집(한국법학회, 2015)

2)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즉, 중선거구제는 소수당에 유리하고 다수당에 불리하며, 지역의 광역화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선거간섭, 매수 등 부정선거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다만, 선거구제에 관한 실질적인 혹은 현실 정치적인 논의에서는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구분하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로 통합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임.³⁾

《 선거구제별 장점 및 단점 》

	장점	단점
소선거구제	• 양대정당제 확립으로 정치적 안정 • 선거인의 대표선택 용이 • 선거인과 의원 사이의 유대 • 선거비용 최소화	• 과다한 사표 발생 • 정당득표율과 의석획득수 괴리 • 지방토착인물의 과다등용 • 선거간섭, 매수 등 부패 가능성 • 게리맨더링의 위험
대선거구제	• 사표 적게 발생 •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 다양한 배경의 인물 선출 가능성 • 부패위험 적음	• 다당제 형성으로 정치적 불안정 • 유권자가 후보자 파악 어려움 • 지역대표성 약화 • 선거비용 많이 소요

출처: 성낙인, 헌법학, 2023, p.159

현행 선거구제의 경우 국회의원은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지방의회의원 중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지역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있음.⁴⁾

3)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9집 (한국법학회, 2015)

지방의회의원선거구는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경우 그 명칭과 관할구역은 현행법 [별표2]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총 정수는 현행법 [별표3]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명칭·구역 및 개별 지역별 의원정수는 개별 자치구·시·군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별 각 법률, 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⁵⁾

4) 참고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논산시, 계룡시 등 11개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바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8명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삭제

3.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⁶⁾에 시·도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고 각 개별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개별법(의원 정수 증감시 법률 개정 필요)에 따라, 이를 제외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경우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별표2]를 국회에서 개정하면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고,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경우 지역별 총 정수를 국회에서 확정된 뒤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정수 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시·군지역별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이 완료됨.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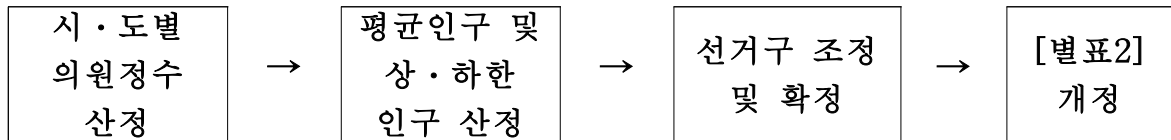
《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 필요 법률 현황 》

구분	개정 법률
시·도의회	「공직선거법」 [별표2]
자치구·시 ·군의회	「공직선거법」 [별표3]
제주도의회 정수 및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등
세종시의회 정수 및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등
예비후보자 기간 경과시 후원회 등	「정치자금법」 부칙(각종 경과조치) 등

2.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및 절차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① 시·도별 의원정수를 산정하고, ② 산정된 의원정수를 바탕으로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이하 “평균인구”) 및 상·하한 인구를 정하며, ③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선거구 조정 및 [별표2] 개정 등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됨.

《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 》



출처: 행정안전부

먼저 시·도별 의원정수는 시·도별 시·군·구(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2배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하나의 시·군·구에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경우(예 A시 甲/乙 선거구) 시·군·구가 아닌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하여 2배수로 산정되며, 산정된 2배수는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 서 조정할 수 있음.

다음으로, 시·도별 인구를 앞에서 산정된 의원정수로 나누어 평균인구를 산출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⁷⁾을 통해 제시한 인구 편차 3:1(평균인구에서 상·하한 50% 기준) 기준으로서 평균인구의 $\pm 50\%$

7) 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판례집 30-1하, 627

인 상·하한 인구를 산출하며, 해당 상·하한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 내에서 상·하한 인구 기준에 초과 또는 미달하는 선거구를 도출함.

개별 선거구 조정은 인접 선거구와 읍·면·동을 교환하여 인구편차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되,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를 분할 또는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다만, ①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 및 도의회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하며, ②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등 현행법상의 예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법 제22조제1항 단서).

개별적인 선거구조정을 거친 이후 해당 조정안에 따라 시·도의회 의원지역구 명칭 및 선거구를 확정하게 되고, 확정안에 따라 국회는 공직선거법 [별표2]를 개정하여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구를 확정하게 됨.

참고로,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중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21,756명)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평균인구(49,765명)의 하한(평균인구의 50%=24,883명)에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난 선거구라 판단하였고, 이에 장수군 선거구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전체에 대해 헌

법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으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선거구구역표 개정시한은 2026년 2월 19일까지임.⁸⁾

3.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및 절차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 인구 증가,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정수를 확정하고, 총 정수를 바탕으로 시·도 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역별 정수를 정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선거구가 확정됨.

다만, 선거구획정과 별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1개 선거구(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선거구, 대구광역시수성구을국회의원선거구, 광주광역시광산구을국회의원선거구 및 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선거구)는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가 현행 2인이상 4인 이하에서 3인이상 5인 이하로 정해진 바 있음.

8) 현재 2025. 10. 23. 2022헌마1247, 공보 349, 1008

4.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쟁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외 헌법불합치 우려가 있는 선거구 조정 또는 관련 조항 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함.

행정안전부의 추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외에 인구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경상북도 영양군·울릉군, 경상남도 의령군 등 9개 지역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5만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도 1명의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부여하도록 한 특례조항에 의해 선거구로 설정되었는 바,⁹⁾ 해당 지역의 선거구획정 방식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최소정수 보장 조항에 대한 개정 여부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위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위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위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 헌법불합치 우려 기초자치단체 》

(단위 : 명, 인구 2025년 10월 기준)

시·도	인구 (A)	선거구 수 (B)	평균인구 (C=A/B)	상한 (D=C*1.5)	하한 (E=C*0.5)	해당 시·군·구	인구
부산(1)	3,249,323	42	77,365	116,047	38,683	중구	36,783
대구(1)	2,358,614	30	78,620	117,930	39,311	군위군	22,341
인천(1)	3,063,332	36	85,093	127,638	42,547	옹진군	19,655
경기(1)	13,786,196	141	97,774	146,661	48,888	연천군	41,402
전북(2)	1,728,726	36	48,020	72,030	24,011	무주군	22,837
						장수군	20,396
경북(2)	2,514,002	54	46,556	69,833	23,278	영양군	15,475
						울릉군	8,766
경남(1)	3,214,134	58	55,423	83,134	27,712	의령군	24,661

출처: 행정안전부

둘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인구기준일 확정이 필요함.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확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사항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시점의 인구를 그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구 확정 구역표가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일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요구됨.¹⁰⁾

셋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서는 선거구 확정을 위한 인구 기준 시점으로 관례적으로 선거일 전년도 10월 말 기준 인구(각각 17년 10월말, 21년 10월말)를 적용하여 왔음.

필요함. 특히, 행정구역 통합외 선거구 통합 방식에 따라 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이 문제되는바, 산정 기준을 현행 시·도별로 각각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를 기준으로 인구와 선거구 수를 합산하여 새롭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선거구 조정 범위와 대표성, 인구편차 기준 등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부칙을 통해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온 특례의 계속적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인구편차 조정과 시·도의원정수 확보를 위해 지역구 시·도의원 기본정수 산정 특례 및 읍·면·동 분할 특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바,¹¹⁾ 이는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특히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11) 「공직선거법」 부칙<제18841호, 2022.4.20.>

제2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화성시제1선거구와 화성시제6선거구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아산시제4선거구와 아산시제5선거구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순천시제7선거구와 순천시제8선거구에,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3선거구와 광양시제4선거구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장흥군제1선거구와 장흥군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장량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4선거구와 포항시제5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1선거구와 양산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의원정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읍·면·동 분할 역시 원칙적 금지¹²⁾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외적 필요성, 제도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시행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IV. 개별 검토의견

[이원택의원안], [임미애의원안1 中 일부], [윤준병의원안 中 일부],
[이상휘의원안 中 일부], [김성원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정점식의원안]

1.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 기준 및 조정범위 조정 등

이원택의원안과 김성원의원안, 정점식의원안은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기준을 인구 현행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여,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과 시·도 간 형평성, 시·도간 편차 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임미애의원안1과 이상휘의원안은 지역구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기준 자체를 삭제하되, 추가적으로 임미애의원안1 현행 지역구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명칭을 선거구시·도의원 및 보정시·도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윤준병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되,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의 범위로 정수 조정 범위를 확대하며, 이 경우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윤준병의원안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

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함.

현행법은 관할 행정구역 수의 2배수를 적용하여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 정수를 산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의원정수를 조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는 최소 1명, 5만명 이상 지역에는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¹³⁾

과거에는 자치구·시·군마다 시·도의원정수를 일률적으로 2명씩 배분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¹⁴⁾ 이후 헌법재판소가 시·도의원지역구 확정 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강화함에 따라 조정범위가 확대되었음.¹⁵⁾

13)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14)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1, 3, 4선거구 및 군산시 제1선거구 부분의 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서 시원적(始原的)으로 생기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도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03.29. 2005헌마985)

15)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투표가치의 비율이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고,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시도의원지역구를 조정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현시점에서는 시도의원지역구 확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

조정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정에 따른 지역 간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정수 배정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 왔으며, 지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그 기준을 인구 5만 명으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시·도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 개정 현황(최근 20년) 》

지방선거 실시 연도	산정기준 (제22조 제1항)	개정일
2006년	• 자치구·시·군마다 각 2명	2002.03.07.
2010년	•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100분의 10 범위 내 조정 가능,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	2010.01.25.
2014년	•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100분의 14 범위 내 조정 가능,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	2014.02.13.
2018년	•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100분의 14 범위 내 조정 가능,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	-
2022년	•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100분의 20 범위 내 조정 가능,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 5만명 미만이면 최소 1명, 인구 5만명 이상이면 최소 2명)	2022.04.20.

이원택의원안과 김성원의원안, 정점식의원안은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완화하고,¹⁶⁾ 시·도의원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시·도 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겪는 농어촌 및 소멸위기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8.06.28. 2014헌마189)

16) 김성원의원안은 최소 정수 배정기준만을 정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1과 이상희의원안은 최소 의원정수 배정기준을 삭제하여 시·도 평균인구 대비 상·하한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확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려는 한편, 현행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제도를 조정하여 광역의회에서의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고(비례성 상향과 관련한 사항은 이하 임미애의원안1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다룸),

윤준병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수 산정 시 조정범위를 100분의 30까지 확대하되, 이 경우에도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정수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윤준병의원안에 더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관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여 지역 대표성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시·도의회의원 정수 관련 각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	이원택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정점식의의원안	임미애의원안1, 이상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총정수 산정기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산어촌 추가	농산어촌 및 형평성 추가
조정범위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	20%~30%
최소정수	인구 5만미만 1명, 5만이상 2명	인구 4만미만 1명, 4만미만 2명	삭제	자치구·시· 군 대표 최소 1명, 인구 5만 이상 2명	인구 4만미만 1명, 4만미만 2명
세부 조정기준	-	인구감소지역 등 고려한 형평성 기준 조정	-	형평성 기준 조정	농산어촌대표 성 및 형평성 기준 조정

이원택의원안과 김성원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정점식의원안은 인구 4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2명의 시·도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지역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구의 인구가 시·도 평균인구 하한을 밑도는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인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임미애의원안¹과 이상휘의원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인구편차 기준을 준수하고 인구 기준에 따른 비례성 확보가 기대되나, 최소 정수 배정기준을 통해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현행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며, 윤준병의원안은 농산어촌·도서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동시에 동일 시·도 내에서 인구 규모가 큰 지역과 작은 지역 간 인구편차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는 시·도의원정수 산정 시 지역대표성 보장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인구기준의 준수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최소 정수에 반영할지 여부는 시·도의원 총 정수와 시도별 정수,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인구비례 3:1), 우리나라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정춘생의원안1], [임미애의원안1 中 일부], [정혜경의원안1 中 일부]

2. 지방의회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도입

정춘생의원안1과 정혜경의원안1은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기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임미애의원안1은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6명으로 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3~5명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의회의원 중 시·도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지역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있음.¹⁷⁾

정춘생의원안1과 정혜경의원안1, 임미애의원안1은 시·도의회의원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중대선거구제에서 그 선출 인원을 더욱 늘림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기초단위에서 대선거구제로의 정도를 강화하여, 중대선거구제 운용에 따른 사표 방지, 득

17) 참고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논산시, 계룡시 등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바 있음.

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 강화, 정치적 다양성 확보, 거대 양당 간 1명씩 후보 선출로 인한 무투표 당선 문제¹⁸⁾ 해결 등의 장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따라 선거구가 지역적으로 넓어져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다수 후보자 출마에 따른 유권자의 선거후보자(당선자) 인식 정도 후퇴, 당선자의 지역대표성 약화 등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하나의 선거구 당 적정 선출인원 수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전면적 도입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18) ‘투표도 안 했는데 ‘의원님’ 490명… 양당 텃밭이 만든 무투표 당선’(한국일보, 2026.01.16.)

[임미애·정춘생·정혜경의원안], [김문수의원안]

3. 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임미애·정춘생·정혜경의원안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 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의회 구성에 있어 표의 증가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안은 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하되, 부칙을 통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 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확정하고자 함.

최근 수도권 중심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방의 상대적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는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극 3특’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권 형성을 추진하였으며, 초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체 구성이 논의되었음.

그러나 최근 정책 방향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행정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행정통합 교부세 및 지원금 등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한 각종 행정통합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3월 5일 공포된 동 법 부칙(제21446호) 제3조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시·도의회의원 정수 산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중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에 있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임미애·정춘생·정혜경의원안은 광역 행정통합의 제도적 환경과 통합특별시 설치법 부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광역시와 도가 통합되어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고,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의회 구성에 있어 표의 등가성·비례성 및 다양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인구편차 기준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김문수의원안은 임미애·정춘생·정혜경의원안과 같이 통합특별시 설치법 부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에서의 지역구 시·도

의회의원 정수를 2인 이상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구역 내에서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통합이 확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중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임.

다만, 현행법상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원칙적으로 자치구·시·군을 기본 단위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서,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두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최소 단위로 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8개 선거구, 전라남도는 10개 선거구로 구성되고, 해당 선거구에서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이루는 사례(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 등)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여러 대표자를 선출하더라도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일 대표자를 선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동 법에서의 선거구 확정 기준과의 정합성,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시·도의회의원선거구를 보면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20개 선거구, 전라남도 의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55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고, 선거구 확정 기준일자가 제7회 및 제8회 지방선거와 같이 선거 전년도 10월 말 기준일 경우 광주광역시의 총 인구수는 1,395,869명, 전라남도의 총 인구수는 1,779,263명으로 나타나,¹⁹⁾ 광주광역시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가 전라남도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를 크게 상회하게 되는바,

이에 두 지역의 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인 3:1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시·도의회의원 선거제도의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선거구 확정 기준의 정합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최소한의 지역대표성 확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 또는 종전 선거구 인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안전부

참고로, 지방선거 선거권을 보유한 외국인 규모의 경우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기초의원과 달리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각 선거구제의 장·단점,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정춘생의원안2]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찬반투표 도입 등

정춘생의원안2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당선인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하나의 지역구에 해당 지역구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유효투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후보자등록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후보자등록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이하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되는 현행 제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 광역·기초의원 121명과 시장·군수 6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48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전체 당선인의 약 1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약 10명 중 1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셈임.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정치적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⁰⁾

한편 현행법상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출할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다만 비례대표 자

20) 무투표 당선 489명, 이번엔 바뀔까... 의원 18명 “여당 결단하라”, 오마이뉴스, 2026.03.13.

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이 각각 1명 또는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양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춘생의원안²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대표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수를 제한하여 거대 양당 중심의 지방의회구성을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통해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찬반투표 결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아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재선거에 필요한 후보자 확보의 어려움, 행정적 부담 증가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법률로 제한할 경우 정당 활동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지역편중 현상 완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등 긍정적인 측면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찬반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유권자가 직접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무투표 당선 규정은 선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동 규정을 합헌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임미애의원안1]

5. 시·도의회의원선거: 원칙적 비례대표제·보정제도 도입

임미애의원안1은 시·도의회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해당 시·도 선거구를 단위로 한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 기반의 ‘선거구의원선거’와 선거구의원선거 이후

보정 값을 바탕으로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보정의원선거’의 조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 지역구당 1명의 인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및 상대다수대표제 기반의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명확히 확보하면서도,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정당 득표를 의석에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절충적으로 보완하는 장점이 있음. 다만, 비례대표의석의 경우 전체의석의 10%에 불과하여 상대다수대표제 기반이 강함에 따라, ①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점, ②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점, ③ 유권자는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하여 전략투표 부담을 갖게 되고 자신의 최선호 후보에게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④ 결과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점, ⑤ 의회와 같이 다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유권자 집단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하지 못하여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고, 거대정당은 과잉대표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²¹⁾

21) ‘지방자치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순위선택투표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검토’(이승택, 법학논총, 2023. P.56.)

이에 임미애의원안1은 시·도의회의원 구성 체계를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구 시·도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하되, 선거구 선거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불비례성을 보정의석 배분을 통해 조정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비례성을 제고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괴리를 완화하여 양당 중심의 독과점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임미애의원안1에 따른 보정 시·도의원은 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계산식에 따라 배분되어,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거 유형에서 관철되고 있는 ‘선거에 의한 선출’ 원칙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당명부식으로 보정 시·도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명부 제출을 통해 선거가 아닌 사실상 임명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직 취임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장점 및 단점 》

장점	단점
정당득표율과 의석차지비율의 일치로 인한 비례성 강화	지역대표성 저해
사표방지	투표, 선거 등 주제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우려
소수정당의 진입 완화로 인한 지방의회 구성 다양화	정쟁 중심의 의회 운영 가능성
거대양당체제 완화(지역주의 완화)	보정 시·도의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어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이 용이해져 의회 내에서 1당 또는 양당체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역대표성 저해, 다수 정당의 진입으로 인한 협치의 어려움, 무소속 후보자의 입후보 불가능 문제 등 여러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변경의 장·단점과 우리나라 정치·사회·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임미애의원안1], [임미애의원안2]

6.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폐지 및 최소의원정수 확대

임미애의원안1과 임미애의원안2는 자치구·시·군의회 최소 의원정수를 현행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임미애의원안1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별로 2명 이상 4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수정당 및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제도를 병행하여 정당 득표에 따른 비례성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시·군의회는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최소 의원정수를 7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1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확대함으로써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례성을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폐지하여 정당의 명부가 아닌 주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임미애의원안1과 임미애의원안2 모두 최소 의원정수를 상향함으로써 의회의 지역적 대표성과 그 구성상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가 폐지될 경우 정당은 선거 경쟁력이 높은 후보자 위주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커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또한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확대는 많은 후보자의 등장과 그로 인한 후보자와 선거인 간의 괴리, 이로 인한 선거인의 정치적 무관심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최소 의원정수를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인구 규모가 작은 자치구·시·군에서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소지도 있는바, 제도 변경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선거가 과열되고 정당 대립이 심화되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당정치 구현에 보탬이 되고있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며, 최소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임미애의원안1]

7.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절차 정비

임미애의원안1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6개월에서 7개월로 변경하고,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등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의 절차를 개편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별표 3]의 개정을 통해 의원 총정수를 확정 한 이후, 각 시·도에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해당 총정수를 바탕으로 인구,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획정위원회는 획정의 이유 및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제출된 획정안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를 최종 확정함.

다만,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획정안 제출 이후의 심사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고, 획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미애의원안1**은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안의 제출 기한을 현행보다 앞당기고, 해당 획정안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방 단위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제출 요구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제출 요구 이후 제출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예외 없이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오류나 획정 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정하지 못한 채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최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총정수 확정이 법정 기한을 넘겨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²²⁾ 그에 따라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역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관련 사항을 법정 기한 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이 시·도지사에게 1회에 한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수정 요청만을 허용하면서, 재제출된 획정안을 예외 없이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오류나 법정 기준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획정안을 수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2) 제7회: 2018년 3월 9일(선거일 2018.06.13.), 제8회: 2022년 4월 20일(선거일 2022.06.01.),

[이해식의원안],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정혜경의원안1 中 일부],
[윤준병의원안 中 일부], [용혜인의원안], [임미애의원안2 中 일부],
[한창민의원안], [정혜경의원안2]

8. 지방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이해식의원안과 윤준병의원안은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 15%로 확대하고,

차규근·김영배의원안 및 정혜경의원안과 용혜인의원안, 임미애의원
안2, 정혜경의원안2은 위 개정안과 같이 지방의회의원 구성에서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을 20% 또는 30%로 확대하고, 이 중 임미애의원안2
를 제외한 개정안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현행 유효
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거나 봉쇄조항 자체를 삭제하고(정혜
경의원안2), 추가적으로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임미애의원안2은 이에
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까지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창민의원안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지역구)의원정수를 기준으로 그 100분의 10으로 하며,²³⁾
비례대표의석은 정당득표수의 합계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23) 예외적으로, 제주도의회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100분의 20임.

정당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곱한 값의 정수 부분을 우선 배분한 후,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값의 크기 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²⁴⁾

이해식의원안과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정혜경의원안1, 윤준병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임미애의원안2, 정혜경의원안2은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의석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의 불비례가 발생하여 지역구 당선 결과가 전체 의석 구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에 비례대표의원

24)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생략)

확대를 통해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 간의 괴리를 완화하고, 지방의회 전체 의석 구성의 비례성·다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더불어 차규근·김영배의원안과 정혜경의원안¹, 용혜인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의 기준(이른바 “봉쇄조항”)을 현행 유효투표 총수의 5%에서 3%로 완화하여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한창민의원안, 정혜경의원안²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임미애의원안²은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 산식으로 전환하여 지역구 당선인수와 정당득표비율 간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임미애의원안² 세부내용 》

구 분	현 행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임미애의원안 ²
방 식	병립형	연동형	연동형
의원 정수	○ 광역 : 지역구의원정수 10% ○ 기초의원 : 기초의원정수 10%	○ 광역 : 지역구의원정수 20% ○ 기초의원 : 기초의원정수 20%	○ 광역 : 지역구의원정수 10% ○ 기초의원 : 기초의원정수 30%
의석할당 정당	당해 선거구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득표 정당	1. 당해 선거구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 정당 2.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1 이상 의석 획득 정당	당해 선거구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득표 정당
의석배분	당해 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 단,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연 = [(당 - 당해)	1.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

구 분	현 행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임미애의원안2
	수가 있는 경우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 (득표수가 같은 경우 정당 간 추첨)	동 배 분 의 석 수 선거구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아니한 당해 선거구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수 $\times$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 해당 정당의 당해 선거구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수] 2. 각 정당별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당해 선거구의 비례대표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text{잔} = (\text{당해} - \text{당해})$	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경우 해당 정당 간 추첨 2.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 3.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

구 분	현 행	차규근·김영배의원안	임미애의원안2
		$\begin{array}{cc} \text{선거구 비례대표의회의석수} & \text{선거구 각 연동배분의석수} \\ \times \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의회의석수} & \times \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의회의석수} \end{array}$ 간 추천 3.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식에 따라 산출한 조정의석수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 $\begin{array}{l} \text{조정} \\ \text{의석수} \end{array} = \frac{\begin{array}{l} \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의회의석수} \\ \times \text{당해 선거구 연동배분의석수} \end{array}}{\begin{array}{l} \text{당해 선거구 각 연동배분의석의 합계} \end{array}}$	

다만,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다수 정당의 의회 진입으로 의회 구성의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반면,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합의 형성 및 협치가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득표수와 의석수 간 비례성의 제고, 의회 구성의 다양화 및 지역주의 기반 완화 등의 장점이 기대되는 반면,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의원을 전체 의원정수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구조상 비례대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구위원의 비율 및 인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바, 비례성이 강화되더라도 지역대표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최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봉쇄조항(「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에 대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제한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음.²⁵⁾

추가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원 선거 당선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수로, 즉,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되어 있는 제도임.

25) 2020헌마956등 (2020헌마956, 2024헌마271)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이나, 의석배분 방식이 복잡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초과 의석(Overhang Seat)²⁶⁾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비율을 상향할지와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배분을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적 장·단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선거문화,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9.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홀수로 구성

장경태의원안은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를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여 전체 의원 정수를 홀수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석수는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

26) 어떤 정당의 지역구당선자 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그 정당에 할당된 의석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의석을 의미함.

322석, 기초의원 1,384석을 차지하였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540석, 기초의원 1,435석을 확보함. 이와 같이 거대 양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광역의원 862석, 기초의원 2,819석으로, 전체 선출의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구조하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짝수이고 양당의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²⁷⁾에는 의장 선출을 비롯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조례 제정 과정 등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어 지방의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경태의원안**은 시·도의회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총 의원정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홀수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정수의 동수 발생 가능성을 산정 및 획정 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축소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구도에서 벗어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의 등장으로 국회 구성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27) ‘나이? 선수?...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막강 권력 의장석 잡아라”’(한국일보, 2022.06.16.)

수 있는바, 단순히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홀수로 할지 여부는 그 도입 필요성과 장·단점,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진성준의원안]

10.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증원

진성준의원안은 「공직선거법」 [별표3]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424명에서 427명으로 3명 증원하여 전체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 역시 2,978명에서 2,981명으로 3명 증원하려는 것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시범실시가 도입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등에서 선거구 구획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종전과 달리 확대 운영된 바 있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는 424명(지역구의원 370명, 비례대표의원 54명)이었지만 시범실시 지역으로 인해 3명이 증원되어, 결과적으로 총 427명(지역구 의원 373명, 비례대표의원 54명)이 선출되었음.

다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종료에 따라 선거구 체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 및 의원정수로의 환원이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진성준의원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증원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확대된 의원정수를 유지함으로써,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적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 23조에 따라 국회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는 [별표 3]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도별 인구 변동 및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향후 [별표 3]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정수 증원 여부는 다른 시·도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수 증원 여부와 함께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송옥주의원안]

1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총량제 폐지 및 인구연동 산정방식 도입

송옥주의원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총 정수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기초의회 의원정수 산정 방식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25만 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도록 하되,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의원정수가 법 시행 당시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기초의회의 선거구획정은 국회가 시·도별 인구증감,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를 [별표3]을 통해 규정하고, 해당 총 정수를 기준 또는 범위로 하여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구를 확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방식은 선거 직전 특정 시점의 인구수를 바탕으로 정한 의원 수 총량을 개별 자치구·시·군의회에 배분하는 것으로, 의원 수 총량을 반영한 시점 이후 인구 증감이 뚜렷한 지역들은 시점 차이로 인한 인구 규모의 변동으로 인해 적정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송옥주의원안**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최소 정수(7명)를 전제로 하면서, 인구 25만명이라는 기준에 따라 의회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여 인구 규모와 의회 규모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산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인구 규모의 기준 시점, 산정 단위 및 계산 방식(반올림 또는 절사 여부) 등이 조문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현행과 유사한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법 시행 당시의 의원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전 정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제23조제1항을 삭제하는 경우 실제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회가 모든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직접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개정안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정수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이 최소 정수만 규정하고 있고, 인구 25만 명의 산정 기준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수산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인구 25만 명 이상의 자치구·시·군과 인구 25만 명에 약간 미달하는 자치구·시·군 간에 의원정수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상회의원안 中 일부]

12. 시·도의원지역구 확정 기준 정비

이상회의원안은 시·도의원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이를 분할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합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가 상하 50퍼센트(인구비례 3: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당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법상 시·도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되,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역으로, 이를 분할하여 확정해야 함.

또한, 시·도 내 시·도의원 지역구는 헌법재판소가 판결²⁸⁾을 통해 제시한 인구 편차 3:1 기준을 준수하여 시·도평균인구에서 상·하한 50%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상회의원안은 시·도의원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단일 자치구·시·군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선거구 획정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로서 정비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지역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로 통합하는 방식은 주민 대표성 및 정치적 책임성의 명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인구편차 예외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한계와 요건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인구편차와 관련한 논란이 재차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위임의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8) 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판례집 30-1하, 6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구·시·군을 합하여 하나의 시·도의원지역
구선거구로 확정하는 것은 지역대표성을 약화하는 측면은 있으나, 의
원정수의 확대 없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3:1)의 범위 내에
서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인구편차 기준 완화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
의 인구편차 허용기준(3:1)은 헌법상 용인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규정
한 것으로, 해당 규정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
난 선거구획정은 선거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별
도의 완화 규정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안3], [김한규의원안]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의석 비율 확대

정춘생의원안3과 김한규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교육의
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도의회 비례대
표의원 정수 비율 확대(25% 또는 30%)를 통해 비례대표의원 정수로
흡수하며,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지역구의원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와 달리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외에 교육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바,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춘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의회 내 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교육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여 왔음.

다만, 2010년 2월 「교육자치법」 개정 부칙을 통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의 일몰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교육 의원 직선제가 폐지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및 교육 위원회 제도 역시 2026년 6월 30일까지를 효력 기한으로 하는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될 예정임.

이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사실상 사문화되는 제도에 해당하는바, 현행 교육의원 정수 5명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배경에서 정춘생의원안3, 김한규의원안은 현행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비례대표의원 비율 확대(205% 또는 30%로 조정)를 통해 흡수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 의원정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정수 유지를 통해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통해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정수의 1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한하여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의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 유지 방안으로서 비례대표의원 확대 외에도 지역구의원 확대 등 다른 대안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조정 여부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그 장·단점,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및 선거문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여부는 제주도의 총인구, 인구편차 상·하한 기준,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선거구 변동사항, 타 시·도와의 형평성,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타 시·도의원 정수 조정 사례, 지역사회 구성의 다양성 정도 및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개정안 조문대비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u>5만명</u>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u>5만명</u>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 ----- ----- ----- ----- ----- ----- ----- ----- ----- ----- ----- ----- ----- ----- <u>. -----4만 명-----</u> ----- ----- <u>-4만명-</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u>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어야 한다.</u>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임미애의원안1>

현행	개정안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할 選舉管理委員會(이하 “ <u>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u> ”라 한다)는 다음 각號와 같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特別市長·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選舉와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會議員(이하 “比例代表市·道議員”이라 한다)選舉의 選舉區選舉事務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u>	2.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市·도지사”라 한다)선거</u> ----- -----
3. <u>地域選舉區國會議員(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選舉,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自治區의 區廳長·市長·郡守(이하 “自治區·市·郡의長”이라 한다)選舉의 選舉區選舉事務는 그 選舉區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第29條(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舉)第3項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第2條</u>	3. -----선거 -----구시·도의회의원(이하 “선거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 ----- ----- ----- ----- ----- ----- -----

(設置)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말한다]

② ~ ⑥ (생략)

第20條(選舉區) ① (생략)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 地域區國會議員,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議員의 選舉區를 단위로 하여 選舉한다.

④ (생략)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议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 이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20條(選舉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의회의원 중 선거구시·도의원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를 단위로 선거하며, 보정시·도의회의원(이하 “보정시·도의원”이라 한다)은 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③ ----- 자치구 · 시 · 군
의원-----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100分の 10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생략)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정시·도의원정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선거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보정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9인-----.

<삭 제>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 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舉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

----7개월-----
-----.

⑥ 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안이 제26조제2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⑨ · 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시·도의회의원선거구는 시·도의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 또는 합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정수는 2명 이상 6명 이하로 하며, 그 시·도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劃定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選出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3명 이상 5명 이하-----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하

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議員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分の 2에 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増員選舉를 실시한다.

4. ~ 6. (생략)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舉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舉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舉區別로 選舉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

-----.

4. ~ 6. (현행과 같음)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 <답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의원선거

④ -----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

⑤ _____ 자치구
 _____ 시 · 군의원선거
 _____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⑥ 정당은 시·도별로 보정시·도의
위원수 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보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候補者登録申請開始日 전 5日(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録申請開始日 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地域區市·道議員選舉

100人 이상 200人 이하

4. (생략)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人 이상 100人 이하. 다만, 人口 1千人 미만의 選舉區에 있어서는 30人 이상 50人 이하

③ ~ ⑤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생략)

정시·도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②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현행과 같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⑮ (생략)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

음)

② -----

---선거구시·도의원선거와 보정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구시·도의원선거와 보정시·도의원-----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과 보정시·도의원후보자-----

-----.

③ ~ ⑮ (현행과 같음)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명부 및 보정시·도의원후보자명부-----

-----.

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 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 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 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

②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생략)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치
구·시·군의원후보자-----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 4. (생략)

③ ~ ⑤ (생략)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 다. (생략)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② ~ ⑤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

② -----

-----.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보정시·도의원후보자가 되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

1.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선거구시·도의원선거, 보정시·도의원후보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및 보정시·도의원후보자-----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② ~ ⑫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2. (생략)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政黨이 設置하되, 選舉事務所 1個所(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舉事務所 1個所)

-----.

1. 2. (현행과 같음)

3.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4. -----의회의원-----

② ~ ⑫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선거구시·도의원선거

-----1개소(선거구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u>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u> 候補者が 設置하되, 당해 選舉區 안에 選舉事務所 1個所 5. 6. (생 략) ② ~ ⑦ (생 략)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생 략) ②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選舉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 여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事務員(제1 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 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 3. (생 략) 4. <u>地域區市·道議員選舉</u> <u>選舉事務所に 10人 이내</u> 5. <u>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u> 選舉事務所に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의 數(算定한 數가 20 미 만인 때에는 20人) 이내 6. (생 략) 7.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u>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u> <u>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u> <u>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u> ③ ~ ⑧ (생 략) 제64조(선거벽보) ① 選舉運動에 사용 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の 寫眞	4. <u>자치구·시·군의원선거</u> ----- ----- 5.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 ----- ----- 6. (현행과 같음) 7. <u>자치구·시·군의원선거</u> ----- <삭 제>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선거벽보) ① ----- -----
--	--

(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
 ・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
 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
 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
 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
 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
 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
 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
 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
 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
 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
 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
 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
 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선거구시・도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시・도
 의원후보자 명단을-----

者の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邑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② _____
 _____선거구시
 • 도의원후보자_____

[illegible]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선거구시·도의
원선거

선거구시·도의원선거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 5. (생략)

⑨ ~ ⑭ (생략)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
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
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
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illegible]

1. ~ 5. (현행과 같음)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67조(현수막) ① -----
-----선거구시·도의원후
보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

② ~ ④ (생략)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u>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u>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u>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 ~ ⑫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생략)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u>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u>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생략) 2. <u>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u>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u>비례대표</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 <u>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자치구·시·군의원선거</u>-----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 ----- -----. 1. (현행과 같음) 2.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u>선거구시·</u>
---	--

<u>시·도의원후보자</u>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u>사람(지역구시·도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u>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생 략)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생 략)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u>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u>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생 략)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u>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u> 가.·나. (생 략) 3. (생 략) ⑤ ~ ⑭ (생 략)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	<u>도의원후보자</u>----- -----<u>사람</u>-----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 ----- 다. (현행과 같음) 2.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
--	---

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
·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
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
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
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
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 ③ (생략)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_____

선거구시 · 도의원 선
거_____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

-----선거구시·도의원
선거-----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 3. (생 략) 4. <u>지역구시·도의원선거</u> <u>4천만원+(인구수×100원)</u> 5. <u>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u> <u>4천만원+(인구수×50원)</u> 6. (생 략) 7. <u>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u> <u>3천500만원+(인구수×100원)</u> 8. <u>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u> <u>3천5백만원+(인구수×50원)</u> 9.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 6. (현행과 같음) 7. <u>자치구·시·군의원선거</u> ----- <삭 제>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 ----- ----- ----- ----- ----- ----- ----- ----- -----
---	--

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 나. (생략)

-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② ~ ⑤ (생략)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과 실비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시·도지사선거의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시·도선거연락소장:14만원 이 내

[illegible]

1. -----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가.·나. (현행과 같음)

2. -----선거구시
· 도의원선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선거구시·도의원선거-----

3. (생 략) 4. <u>지역구시·도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장선거의선거연락소장:</u> 10만 원이내 5.·6.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46條(選舉方法) ① (생 략) ② 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u>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u>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생 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 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の 記號·政黨推薦候補者の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の 政黨推薦候補者の 所屬政黨名の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u>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계재순위를 정	3. (현행과 같음) 4. <u>자치구·시·군의원선거</u>----- ----- ----- 5.·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6條(選舉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u>----- -----. ③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 등) ① ----- ----- ----- ----- -----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생략)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 ⑩ (생략)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③ (생략)

④ 選舉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생략)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

-----.

1. (현행과 같음)

2.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
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
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생략)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
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
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
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2(거소투표) -----

-----선거구시·
도의원선거-----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③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 ⑤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u>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 10. (생략)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u>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轄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3. ~ 10. (현행과 같음)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 ----- -----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 -----.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 得票數
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을 작성하
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地域區市・道
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管理
委員會가 당해 選舉區에서 有效投票
의 다수를 얻은 者(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
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
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
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

② (생략)

③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
公告・통지)第4項 및 第188條(地域
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
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지역
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
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
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
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선거구시・도의원선거-----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90條(자치구・시・군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자치구・시・
군의원-----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
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구・시
・군의원-----

-----“자치구・시・
군의원후보자”-----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제190조의2(선거구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거구시·도 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에서-----

해당 선거구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시·도의원 정수-----
정수-----
-----.

<삭 제>.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

③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선거구시·도의원의석정수-----

-----선거구시·도의원의석정수-----

-----선거구시·도의원의석-----
-----선거구시·도의원의석배분-----

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 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신 설>

-----선거구시·도의원정수-----

④ -----

-----선거구시·도의원-----

-----“선거구시·도의원”-----

제190조의3(보정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시·도별 보정시·도의원의석은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서 시·도별 유효투표총수(각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다 합한 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보정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②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보정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
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보정
의석할당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
다.

$$\begin{aligned} \text{보정} & \quad \text{시} \cdot \text{보정의석할당} \\ \text{배분} & \quad \text{도 의} \quad \text{정당이 아닌} \\ \text{의석} & \quad \text{원} \quad \text{정당의 선거구} \\ \text{수} & \quad \text{정수} \quad \text{시·도의원 당} \\ & \quad \quad \quad \text{선인수} \\ & \quad \times \text{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득} \\ & \quad \quad \text{표비율} \\ & \quad - \text{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의 선} \\ & \quad \quad \text{거구시·도의원 당선인수} \end{aligned}$$

③ 제2항의 득표비율은 각 보정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보정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각 보정의석할당정
당에 배분한 보정배분의석수의 합계
가 보정시·도의원 의석정수를 초과
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의석수(이
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
를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보정시·
도의원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ligned} \text{조정} & \quad \text{보 정} \\ \text{의 석} & \quad \text{시} \cdot \text{제2항에 따른 보정의석} \\ \text{수} & \quad \text{도 의} \quad \times \text{할당정당의 보정배분의} \\ & \quad \text{원 정} \quad \text{석수} \\ & \quad \text{수} \\ & \quad \div \text{제2항에 따른 각 보정의석할당} \\ & \quad \quad \text{정당의 보정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ligned}$$

⑤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생략)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1. · 2. (생략)

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 (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보정시·도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보정시·도의원”으로 본다.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

-----선거구시·도
의원선거-----

-----.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선거구시·도의원-----

④ -----선거구시·도의원-----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第136條(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생략) ②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中央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하는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舉, <u>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u>, <u>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u>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地域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과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94條(當選人の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u>의 再配分) ① (생략) 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規定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u>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 ----- ----- ----- -----. 第194條(當選人の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u>선거구시·도의원의석</u>의 再配分)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선거구시·도의원의석----- -----
--	--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③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當選人이 그 任期開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選舉 당시의 所屬政黨이 추천한 候補者를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④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

-----.

③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명부-----

-----.

④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 ② (생략)

③ 第1項의 再選舉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 再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合黨전 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합黨된 政黨의 候補者(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
한 政黨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選舉 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
다.

⑥ (생략)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구시 · 도의원선거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선거구시 · 도의원선
거 _____

⑥ (현행과 같음)

⑦ -----선거구
시·도의원선거-----

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누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
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
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
음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
는 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
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
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
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
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⑨ (생략)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② (생략)

③ 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
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
조의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議席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 그 候補者의 합당
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

④・⑤ (생략)

第200條(補闕選舉) ① (생략)

②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를
받은 후 10日 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

-----선거구시・도의원-----
-----.

⑧ -----선거구
시・도의원선거-----

-----.

⑨ (현행과 같음)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선거구시・
도의원-----

-----.

④・⑤ (현행과 같음)

第200條(補闕選舉)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구시・
도의원-----

이 그 選舉 당시에 소속한 政黨의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會議員 및 지방의회의원의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補闕選舉 등(大統領選舉·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選舉日부터 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미만이거나,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の 1 이상이 闕員(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舉·延期된 選舉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の 1 이상이 闕員되어 補闕選舉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闕員된 議員 全員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第205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舉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선거구시

·도의원후보자명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205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에 관한 特例) ①

-----선거구

시·도의원선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를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

① -----

-----선거구시·도의원
선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第222條(選舉訴訟) ① (생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選舉의 效力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舉區를 관할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222條(選舉訴訟) ① (현행과 같음)

②

-----선

-----선
거구시 · 도의원 선거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 -----

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第223條(當選訴訟) ① -----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및 선거구 시·도의원의 의석의 재배분)-----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현행과 같음)

인한(當選無效)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illegible]

<이해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第22條(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생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u>100분의 10</u>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생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u>100분의 10</u>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第22條(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100분</u> 의 <u>20</u>-----.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100</u> <u>0분의 20</u>-----.

<차규근·김영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생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u>100분의 10</u>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100분</u> 의 <u>20</u>-----.

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생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 -----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0
0분의 20-----, -----
-----.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다

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begin{array}{l} \text{연 동 배 분 의 석 수} = \left[\left(\begin{array}{l} \text{당 해 선 거 구 의 석 할 당 정 당 이 추 천 하 지 아니한 당 해 선 거 구 의 지 역 구 지 방 의 회 의 원 당 선 인 수} \\ \text{당 해 선 거 구 지 방 의 회 의 원 정 수}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text{해 당 정 당의 당 해 선 거 구 비 례 대 표 지 방 의 회 의 원 선 거 득 표 비 율} \\ \text{해 당 정 당의 당 해 선 거 구 지 역 구 지 방 의 회 의 원 당 선 인 수} \end{array} \right] \end{array}$$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당해 선거구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text{잔여 배분의석수} = \left(\frac{\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원 의석정수}}{\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원 의석정수}} - \frac{\text{당해 선거구의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원 의원선거 득표비율}} \right)$$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text{조정석수} = \frac{\text{당해 선거구 비례대표지방의원 의석정수} \times \text{당해 선거구의 연동배분의석수}}{\text{당해 선거구의 각 연동배분의석의 합계}}$$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생략)

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100
분의 3-----

-----.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진성준의원안>

현 행	진성준의원안																																																																
■ 공직선거법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78명)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도</th><th style="text-align: center;">총 정 수</th></tr> </thead> <tbody> <tr><td>서울특별시</td><td style="text-align: center;">424</td></tr> <tr><td>부산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182</td></tr> <tr><td>대구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120</td></tr> <tr><td>인천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122</td></tr> <tr><td>광주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68</td></tr> <tr><td>대전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63</td></tr> <tr><td>울산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50</td></tr> <tr><td>경 기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460</td></tr> <tr><td>강 원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74</td></tr> <tr><td>충 청 북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36</td></tr> <tr><td>충 청 남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76</td></tr> <tr><td>전 북 특 별 자 치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98</td></tr> <tr><td>전 라 남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47</td></tr> <tr><td>경 상 북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88</td></tr> <tr><td>경 상 남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70</td></tr> </tbody> </table> <신 설>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4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 기 도	460	강 원 도	174	충 청 북 도	136	충 청 남 도	176	전 북 특 별 자 치 도	198	전 라 남 도	247	경 상 북 도	288	경 상 남 도	270	■ 공직선거법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81명)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도</th><th style="text-align: center;">총 정 수</th></tr> </thead> <tbody> <tr><td>서울특별시</td><td style="text-align: center;">427</td></tr> <tr><td>부산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182</td></tr> <tr><td>대구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120</td></tr> <tr><td>인천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122</td></tr> <tr><td>광주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68</td></tr> <tr><td>대전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63</td></tr> <tr><td>울산광역시</td><td style="text-align: center;">50</td></tr> <tr><td>경 기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460</td></tr> <tr><td>강 원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74</td></tr> <tr><td>충 청 북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36</td></tr> <tr><td>충 청 남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76</td></tr> <tr><td>전 북 특 별 자 치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198</td></tr> <tr><td>전 라 남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47</td></tr> <tr><td>경 상 북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88</td></tr> <tr><td>경 상 남 도</td><td style="text-align: center;">270</td></tr> </tbody> </table> <u>부 칙</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의 총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 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 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 구제 확대 시범실시 종료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7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 기 도	460	강 원 도	174	충 청 북 도	136	충 청 남 도	176	전 북 특 별 자 치 도	198	전 라 남 도	247	경 상 북 도	288	경 상 남 도	270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4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 기 도	460																																																																
강 원 도	174																																																																
충 청 북 도	136																																																																
충 청 남 도	176																																																																
전 북 특 별 자 치 도	198																																																																
전 라 남 도	247																																																																
경 상 북 도	288																																																																
경 상 남 도	270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27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 기 도	460																																																																
강 원 도	174																																																																
충 청 북 도	136																																																																
충 청 남 도	176																																																																
전 북 특 별 자 치 도	198																																																																
전 라 남 도	247																																																																
경 상 북 도	288																																																																
경 상 남 도	270																																																																

	<u>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이하 “선거구”라 한다)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한다.</u>
--	---

<송옥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u>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u> ② <u>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후단 신설></u>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삭 제> ② ----- <u>7명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한다. 이 경우 인구에는 「출입국</u>

③ (생 략)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정혜경의원안1>

현행	개정안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생 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100分の 10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20 으로-----, ----- -, -----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생 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0으로-----, ----- --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舉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

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합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
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
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
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
다.

③ · ④ (생략)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

3인 이상 5인 이하로

②

3인 이상

5인 이하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3-----

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 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 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舉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定數를 19명으로 한다.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인구·행정구역·지세
·교통·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100분의 30의-----
-----인구가-----

-----하고, 본문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는 경우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⑤ -----제1항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舉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6條(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시·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는 상하 50퍼센트(인구비례 3: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② ~ ④ (생략)	<u>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 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용혜인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생략)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u>100分の 10</u> 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④----- ----- ----- <u>100분의 30</u> <u>으로</u> -----. -. -----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생략)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u>100분의 10으로</u>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 ----- <u>100분</u> <u>의 30으로</u> ----. -----.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의 결정·공고·통지) ①----- ----- -----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생 략)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

-- 100분의 3 -----

② (현행과 같음)

③-----

<김성원의원안>

– 147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임미애의원안2>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생략)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u>7인</u> 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u>100분의 10</u> 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u>9인</u> -----. ③ ----- ----- <u>100분의 30</u> -----. ----- -----.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생략)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u>2인 이상 4인 이하</u> 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3인 이상</u> <u>으로</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생략)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의의 추천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

-----.

-----.

1. (현행과 같음)

2. -----

----- 제189조, 제190조의2
및 제190조의3 -----

-----.

제190조의2(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시·도의원 -----

----- 비례대표시·도의원 -----

-----.

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생략)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정수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을-----
-----.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이-----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의-----

-----.

④ -----

-----비례대표시·도의원-----
-----.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신 설>

제190조의3(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석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

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비

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

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

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

율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의석

을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

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

여 산출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

정수(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

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

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천에 의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은 제2항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한다.

④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이하 이 조에서 “추가 의석”이라 한다)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추가 의석을 그대로 보유한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
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생략)

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
유로 인한 再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
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
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
다.

⑥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
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
7항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으로 본다.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
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제1
90조의3(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석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
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 . ⑨ (생략)	----- ----- -----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0조의2 또는 제190조의3----- ----- ----- ----- ----- ----- ⑧ . ⑨ (현행과 같음)
--	---

<박덕흠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위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u>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u>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 ----- ----- ----- ----- ----- ----- ----- ----- --다음 각 호에 따른----- ----- ----- ---4만명 미만----- -----

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u>5만명</u>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u>5만명</u>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 -. -----<u>4만명</u>----- ----- -----<u>4만명</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수 외에 인구 변동 추이, 인구감소지역의 분포, 생활권의 연계성 및 지역대표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한창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의 결정·공고·통지) ①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 ----- ----- “득표정당”----- ----- -----

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

----- 득표정당
에 -----

----- 득표정당 -----
----- 득표정당 -----

②-----

----- 득표정당간 -----

----- 득표정
당에 배분한 -----

----- 득표정당에 1석씩 -----
-----. <단서 삭제> <후단 삭제>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③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舉區別로 選舉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の 등록은 無效로 한다. 1. (생략)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區別로 選舉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u>같은 조 제3항에</u> 따른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舉權者の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 11. (생략) ② ~ ④ (생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 ----- ----- ----- -. ----- ----- <u>있으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미만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u>----- -----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	--

掲載順位 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の 記號・政黨推薦候補者の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は 候補者の 政黨推薦候補者の 所屬政黨名の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③ (생략)

④ 選舉人は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단서 신설>

掲載順位 등) ① -----

-----.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에서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

항에 따라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

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

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

⑤ ~ ⑧ (생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생략)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⑧ (생략)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	<u>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u>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하여야 한다.</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⑭ (생략)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생략)

② 候補者登録마감시각에 候補者가
당해 選舉區에서 選舉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거나 候補者登録마감후
選舉日 投票開始時刻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録이 無效로 되
어 候補者數가 당해 選舉區에서 選
舉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舉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신설>

③ (생략)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
의 決定·公告·통지) ① (생략)

다만, 제190조제2항 또는
제19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의 해당란에 기표하여야 한다.

⑥ ~ ⑭ (현행과 같음)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
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
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
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
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
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
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
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
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
의 決定·公告·통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188조제3항-----

-----.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

-----제1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選舉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정해경의원안2>

현행	개정안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생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100分の <u>10</u>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생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u>10</u>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30</u>으로-----.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30</u>으로-----. -----.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의 결정·공고·통지) ① ----- -----

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

-----각
정당에-----

-----소수점 이
하 수가-----정당에-----
-----그 수가 같은 때에는--

-----소수점-----

② -----

-----정당간의-----

-----정당에 배분한-----

--소수점 이하 수가-----
정당에 1석씩-----.

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
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
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
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
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
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
에 1석씩 배분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
 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
 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
 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
 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
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
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 <단서 삭제>
 제>

③ -----

 -----, <단서 삭제>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

<임미애 · 정춘생 · 정혜경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구성의 다양성 등을 보장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이하 “통합시의원지역구”라 한다)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확정하고, 하나의 통합시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 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김문수의원안>

현행	개정안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 ④ (생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에는 광역시·도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의원지역구(통합 전 광역시의원지역구와 같거나 겹치는 시·의원지역구에 한정한다)에서 선출할 지역구시·의원정수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한다.

<정춘생의원안3>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회의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 -----정수는----- ----- ----- ----- ----- ----- -----.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② ----- ----- -----의원정수의 100 분의 30----- ----- ----- ----- -----.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 ----- ----- ----- ----- -----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절 교육의원

-위원회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삭 제>

<삭 제>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삭 제>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절 교육위원회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삭 제>

<삭 제>

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
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
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
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
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
는 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
68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

<삭 제>

하여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0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삭 제>

<삭 제>

<삭 제>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나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삭 제>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

“<u>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u>”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② (생략)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u>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u>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u>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략)	----“<u>도의회</u>”----- -----.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삭 제> ② ----- -----제29조까지를-----. 1. 2. (현행과 같음)
---	---

<김한규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6조(도의회위원의 정수에 관한 특별례) ①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위원(이하 “도의회위원”이라 한다)의 <u>정수</u>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위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제36조(도의회위원의 정수에 관한 특별례) ① ----- <u>정수</u> 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u>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u>,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나 그	② ----- ----- -----<u>의원정수의 100</u> <u>분의 25</u> ----- ----- ----- -----.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 ----- ----- ----- ----- -----<u>위원회의</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 ----- ----- ----- ----- -----.
--	---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나 그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u>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u>”로, “행정안전부장관”은 “<u>교육부장관</u>”으로 본다. ② (생략)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u>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u>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u>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략)	----- ----- ----- ----“<u>도의회</u>”----- ----- -----.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삭 제> ② ----- ----- -----제29조까지를-----. 1. 2. (현행과 같음)
---	---